【제3회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제1차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포함)

심 사 보 고 서

2026년 9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년 8월 24일, 영종구청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6년 9월 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회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9.4.~9.1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재무과장 유동숙)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50, 151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5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와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 수 납 액 : 762,965,467,772원
- 지 출 액 : 666,956,973,129원
- 결산상잉여금 : 96,008,494,643원

※ 결산상잉여금 중 명시이월 7,232,822,260원, 사고이월 4,614,691,040원, 계속비이월 48,908,989,369원, 보조금실제반납금 9,060,949,791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519,042,183원(지정재원잉여금 672,000,000원 제외)

○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수　　납　　액 : 19,084,611,441원
- 지　　출　　액 : 7,797,179,976원
- 결산상잉여금 : 11,287,431,465원

※ 결산상잉여금 중 명시이월 395,953,150원, 사고이월 55,030,880원, 계속비 이월 2,579,552,880원, 보조금실제반납금 58,539,389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198,355,166원

○ 기금회계 결산

- 전년도말 조성액 : 33,711,755,169원
- 당해연도 조성액 : 2,624,628,628원
- 당해연도 사용액 : 8,844,088,314원
- 당해연도말 조성액 : 27,492,295,483원

○ 재무제표

- 총　자　산 : 1,605,641,014,363원
- 총　부　채 : 39,046,201,786원
- 순　자　산 : 1,566,594,812,577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안영미)

가.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	세입결산액(수납액) ⓑ	세출결산액(지출액) ⓒ	결산상잉여금 ⓓ=ⓑ-ⓒ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비율(%)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반납액	지정재원잉여금	순세계잉여금	세입 ⓑ/ⓐ	세출 ⓒ/ⓐ
증감액	57,028,894	55,027,229	68,130,827	△13,103,598	△17,850,541 (△20,650,501)	797,916	672,000	3,277,027	△0.4	2.6
2025 회계연도	777,103,244	782,050,079	674,754,153	107,295,926	63,787,040	9,119,489	672,000	33,717,397	100.6	86.8
2024 회계연도	720,074,350	727,022,850	606,623,326	120,399,524	81,637,581	8,321,573	0	30,440,370	101.0	84.2

※ 금액(단위)은 반올림으로 계산하여 일부 끝자리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 이하 같음
※ 다음연도 이월액 = 명시이월 + 사고이월 + 계속비이월
※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비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로 별도 표시
※ 순세계잉여금 = 결산상잉여금 - 다음연도 이월액 - 보조금 집행잔액 - 지정재원잉여금

❍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의 총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777,103,24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7,028,894천원이 증가하였고,

❍ 세입결산액(수납액)은 782,050,079천원으로 2024회계연도 대비 55,027,229천원이 증가하였고,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0.6%로 2024회계연도 수납률 101.0%보다 0.4% 감소하였으며,

❍ 세출결산액(지출액)은 674,754,153천원으로 2024회계연도 보다 68,130,827천원이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지출률은 86.8%이며 전년도 지출률 84.2% 보다 2.6% 증가하였음

❍ 또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07,295,926천원이고, 이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3,717,397천원이며, 이는 세원 발굴의 노력과 엄정한 지출관리의 결과라 할 수 있지만 다소 명확하지 않은 세수 추계와 소극적 사업 추진이라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세입예산 관리 강화는 물론 세출 규모를 적정 규모로 유지하여야 할 것임

나. 세입결산

1)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	수납율(%) ⓑ/ⓐ	정리보류액 ⓒ	미수납액 ⓓ=ⓐ-ⓑ-ⓒ
합 계	756,685,875	812,653,430	762,965,468	93.9%	2,274,301	47,413,661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	수납율(%) ⓑ/ⓐ	정리보류액 ⓒ	미수납액 ⓓ=ⓐ-ⓑ-ⓒ
지방세수입	173,587,000	198,225,572	178,112,583	89.9%	184,378	19,928,611
세외수입	76,043,148	107,699,972	78,124,999	72.5%	2,089,923	27,485,050
지방교부세	15,086,000	14,543,427	14,543,427	100.0%	0	0
조정교부금등	38,151,069	36,986,978	36,986,978	100.0%	0	0
보조금	337,259,348	337,248,612	337,248,612	100.0%	0	0
지방채	1,500,000	1,500,000	1,500,000	100.0%	0	0
보존수입등및내부거래	115,059,310	116,448,869	116,448,869	100.0%	0	0

○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756,685,875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812,653,430천원으로 762,965,468천원을 실제 수납처리함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93.9%를 수납하였음

○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 미이행(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운 면도 많지만 재산 압류 및 공매실시, 행정제재 예고로 자진납부 유도 등 보다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한 체납액 관리가 필요할 것임

○ 세외수입의 경우 지방세와 달리 경기변동이나 정책방향에 따라 변동이 심하여 재원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수입으로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4조[1]에 의하면 세입

1) 제4조(자체수입)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稅外收入)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입을 전망할 때에는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전망 시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고려 종합적으로 전망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본예산 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추가 세입은 추경에 반영하는 등 세입추계의 정확성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전체 수납률은 93.9%로 세입예산 추계가 실제 수납규모와 일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항목별 회계의 정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세입에 연동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므로, 세입예산의 오차가 크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되거나 순세계잉여금 과다 계상, 세입 부족 등으로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됨

○ 특히 지방세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기초가 되므로, 향후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의 정확한 세수추계는 물론 합리적인 세입 예산 관리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전년대비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증 감 액	58,245,348	42,947,320	58,440,857	△1,189,951	△14,303,585
2025회계년도	756,685,875	812,653,430	762,965,468	2,274,302	47,413,661
2024회계년도	698,440,527	769,706,110	704,524,611	3,464,253	61,717,246

○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은 49,687,963천원으로 대부분 임시적 세외수입과 지난연도 수입이며, 2024회계연도와 비교하여 15,493,536천원이 감소하였음

【 세입금 정리보류처분 사유별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정리보류액	사유별					
		체납처분중지	소멸시효완성	행방불명	무재산	평가액부족	기 타
합 계	2,274,301 (100 %)	540,831 (24%)	404,257 (18%)	26,652 (1%)	585,254 (25%)	681,338 (30%)	35,970 (2%)
지방세 수입	184,378	14,121	41,539	0	128,719	0	0
세외수입	2,089,923	526,710	362,718	26,652	456,535	681,338	35,970

○ 지방세수입의 정리보류 사유별 현황은 체납처분중지 14,121천원, 소멸시효 완성 41,539천원, 무재산 128,719천원으로 지방세는 부동산 등 고정재산 또는 유형재산에 부과하는 세액임에도 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완성, 무재산 등의 사유로 기 부과된 체납액을 정리보류 함

○ 성실한 납세자와 조세평등의 원칙에 따라 정리보류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정리보류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유무를 철저히 조사하는 등 정리보류 사유별 체납액 징수대책이 요구됨

○ 또한 무재산 등의 사유로 정리보류 결정을 한 이후에도 소멸시효 전까지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임

【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미수납액	사 유 별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 태만	폐업 또는 부도	소송 계류	국외 이주	자금 압박	기 타	납기 미도래
합 계	47,413,659 (100%)	1,558,411 (3.29%)	35,846 (0.08%)	40,644,405 (85.72%)	990,909 (2.09%)	183,384 (0.39%)	165,101 (0.35%)	752,654 (1.59%)	157,773 (0.33%)	2,925,176 (6.17%)
지방세 수입	19,928,609	1,252,668	34,933	16,813,731	990,909	0	165,101	556,816	0	114,451
세외 수입	27,485,050	305,743	913	23,830,674	0	183,384	0	195,838	157,773	2,810,725

○ 세입 중 미수납액이 많으면 다음연도 세입예산 추계에 정확성을 기할 수 없고 세수를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과징금 등은 부과 즉시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확보가 어렵고, 압류 등을 하여도 채권 우선순위가 후순위이므로 사실상 채권확보를 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임

○ 따라서 지속적인 징수독려 및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발굴, 다양한 재산 추적방안 등을 모색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의 감소를 위해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음

2) 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	수납율 (%) ⓑ/ⓐ	정리보류액 ⓒ	미수납액 ⓓ=ⓐ-ⓑ-ⓒ
합 계	20,417,369	24,092,466	19,084,612	79.2%	743,794	4,264,06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478,070	483,020	483,020	100.0%	0	0
의료급여기금	523,943	1,202,787	546,415	45.4%	1319	655,053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	수납율(%) ⓑ/ⓐ	정리보류액 ⓒ	미수납액 ⓓ=ⓐ-ⓑ-ⓒ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5,114,623	5,115,480	5,115,480	100.0%	0	0
지하수관리	33,158	34,515	30,381	88.0%	1,034	3,101
기반시설	345,084	348,849	348,849	100.0%	0	0
주차장	13,922,491	16,907,815	12,560,467	74.3%	741,441	3,605,908

○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0,417,369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4,092,466천원으로 19,084,612천원을 실제수납 처리함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79%를 수납하였음

○ 회계별로 수납률을 살펴보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00%, 의료급여기금 45.4%,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100%, 지하수관리 88.0%, 기반시설 100%, 주차장 74.3%임

【 전년대비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증 감 액	△1,216,455	△3,474,141	△3,413,628	738,378	△798,892
2025회계년도	20,417,368	24,092,467	19,084,611	743,793	4,264,063
2024회계년도	21,633,823	27,566,608	22,498,239	5,415	5,062,955

○ 특별회계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은 5,007,856천원으로 2024회계연도와 비교하여 798,892천원이 감소하였음

【 세입금 정리보류 사유별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정 리 보 류 액	사 유 별 (기 타)
합 계	**743,794 (100.0%)**	**743,794 (100.0%)**
의 료 급 여 기 금	1,319	1,319
지 하 수 관 리	1,034	1,034
주 차 장	741,441	741,441

○ 의료급여기금 1,319천원, 지하수관리 1,034천원, 주차장 741,441천원의 사유가 기타로 분류되어 있으나 추후에는 정확한 원인규명을 통해 정리보류최소화 및 결산자료에 정확성을 제고 해야 할것임

【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미수납액	사 유 별		
		행방불명	납세태만	기 타
합 계	**4,264,062 (100.0%)**	**2,596 (0.06%)**	**4,260,961 (99.93%)**	**505 (0.01%)**
의 료 급 여 기 금	655,053	0	655,053	0
지 하 수 관 리	3,101	2,596	0	505
주 차 장	3,605,908	0	3,605,908	0

○ 2024회계연도 대비 미수납액이 의료급여기금의 경우 1,902천원 증가, 지하수관리 666천원 감소, 주차장의 경우 800,128천원 감소, 특별회계 전체의 미수납액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채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볼수 있음

다. 세출결산

1)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777,103,244	674,754,153	63,787,040	38,562,051
일반회계	756,685,875	666,956,973	60,756,503	28,972,400
특별회계	20,417,368	7,797,180	3,030,537	9,589,65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478,070	459,445	0	18,624
의료급여기금	523,943	478,485	0	45,45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5,114,623	0	0	5,114,623
지하수관리	33,158	29,797	0	3,361
기반시설	345,084	0	0	345,084
주차장	13,922,491	6,829,453	3,030,537	4,062,501

○ 회계별로 세출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756,685,875천원, 지출액이 666,956,973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60,756,503천원, 집행잔액이 28,972,400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0,417,368천원에 대한지출액이 7,797,180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030,537천원, 집행잔액은 9,589,651천원임

○ 미집행액의 경우 사업예산이 토지 협의보상 등 행정절차 지연, 사업기간 변경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거나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판단되며, 보다 계획성 있는 재원투자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이월액(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이월액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2025 회계 연도	합 계	777,103,243	63,787,039	7,628,775	4,669,722	51,488,542
	일반회계	756,685,875	60,756,502	7,232,822	4,614,691	48,908,989
	특별회계	20,417,368	3,030,537	395,953	55,031	2,579,553
2024 회계 연도	합 계	720,074,350	81,637,582	18,647,044	1,869,762	61,120,776
	일반회계	698,440,527	79,969,380	18,579,921	1,761,307	59,628,152
	특별회계	21,633,823	1,668,202	67,123	108,455	1,492,624

○ 「지방재정법」 제50조[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사업비는 63,787,039천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17,850,543천원이 감소하였음

○ 예산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써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세출 재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은 사업 추진의 계속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으나, 소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한 것일 수 있으므로 차기 예산 편성시에는 사업의 조기 추진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여 예산의 이월액 발생 규모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2)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 특히, 사고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이월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아울러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예산이 불용 또는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집행관리와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3)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

(단위 : 천원)

구 분	2025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	예산현액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
총 계	**777,103,243**	**9,119,489**	**38,562,051**	**720,074,350**	**8,321,573**	**31,675,443**
일반회계	756,685,875	9,060,950	28,972,400	698,440,527	8,249,218	27,293,356
특별회계	20,417,368	58,539	9,589,651	21,633,823	72,355	4,382,087

※ 보조금반납금 : 보조사업 정산 후 국가나 시도에 반환 예정인 금액

※ 집행잔액 : 세출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금, 보조금반납금을 공제한 잔액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보조금반납금은 9,119,489천원, 집행잔액은 38,562,051천원이고, 예산현액은 777,103,243천원으로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의 합계는 2024회계연도와 비교하면 7,684,524천원 증가함

❍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예산 운용상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도 있으나 배분된 재원이 보다 시급한 분야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된다는 것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 적시성, 사전 이행 절차, 기타 장애요인 등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집행 또한 성실히 이행되어야 할 것임

4) 예산이용 · 예산전용 · 예산이체

【 일반회계 예산이용·예산전용·예산이체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25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도 비교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예 산 전 용	7	43,848	12	101,140	△5	△57,302
예 산 이 체	3	38,770	213	41,713,242	△210	△41,674,472

※ 일반회계 예산이용 건수 없음

【 특별회계 예산이용·예산전용·예산이체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25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도 비교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예 산 전 용	0	0	1	4,000	△1	△4,000

※ 특별회계 예산이용 건수 없음

○ 예산의 전용은「지방재정법」제49조[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에 따라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의회의 사전 심의나 보고 없이 예산을 변경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사후에 그 내용을 결산서에 명기토록 규정하고 있는 제도임

3)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4) 제55조(예산의 전용)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1. 인건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같은 규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율범위 중 인건비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포함한다]
2. 시설비 및 부대비
3. 상환금.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②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다.

○ 또한 예산의 이체는「지방재정법」제47조의2[5]에 따라 회계연도 중에 예산 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제도임

○ 이러한 제도들은 재정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이나 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이므로 시급을 다투는 경우 외에는 추경예산 또는 차기년도 본예산 편성 시 계상될 수 있도록 하여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라. 결산상 잉여금

(단위 : 천원)

구 분	결산상 잉여금	결산상 잉여금					
		다 음 연 도 이 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지정재원잉여금	순 세 계 잉 여 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107,295,926**	**7,628,775**	**4,669,722**	**51,488,542**	**9,119,489**	**672,000**	**33,717,397**
일반회계	96,008,495	7,232,822	4,614,691	48,908,989	9,060,950	672,000	25,519,042
특별회계	11,287,431	395,953	55,031	2,579,553	58,539		8,198,355

○ 결산상 잉여금은 세입결산액(수납액)에서 세출결산액(지출액)을 차감한 잔액 107,295,926천원임

○ 순세계잉여금이 적을수록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측이 정확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채무상환과 다음연도의 긴급재정수요가 발생하였을 경우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입재원이므로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5) 제47조의2(예산의 이용·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채권·채무결산

【 회계별 채권·채무 현재액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도말 현재액 ⓐ	2025년도 중 증감액			2025년도말 현재액
			증 감 ⓑ=ⓒ-ⓓ	당해연도발생액 ⓒ	당해연도소멸액 ⓓ	
채권	**합 계**	**4.408.793**	**2,613,476**	**2,961,912**	**348,436**	**7,022,269**
	일반회계	2,599.345	2,395,578	2,639,000	243,422	4,994,923
	특별회계	0	0	0	0	0
	기 금	1,809.447	217,898	322,912	105,014	2,027,346
채무	**합 계**	**6,910,000**	**910,000**	**1,500,000**	**590,000**	**7,820,000**
	일반회계	6,910,000	910,000	1,500,000	590,000	7,820,000
	특별회계	0	**0**	**0**	**0**	**0**

○ 2025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7,022,269천원으로 현재액보다 2,613,476천원 증가함

○ 채권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보증금 채권은 사무실임대, 전화선예치금, 회원제 콘도회원권 등이며, 융자금채권은 공무원학자대여금, 사회복지기금의 융자금 채권 등이 있음

○ 우리구가 갚아야 할 채무액은 2025년도말 현재액이 7,820,000천원으로 이는 개항동 행정복합센터 신축 관련 지역개발기금 장기차입금(2년거치 10년 상환) 발생에 따른 것으로, 전년도말 기준 1,500,000천원 증가하였음

○ 향후에도 채권관리 및 채무상환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자금운용이 되도록 관리해야 할 것임

바. 기금결산

【 기금별 결산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도말 조성액 ⓐ	2025년도 증감액			2025년도말 조성액 ⓐ + ⓑ
		증감액 ⓑ=ⓒ-ⓓ	조성액 ⓒ	사용액 ⓓ	
합 계	**33,711,755**	**△6,219,461**	**2,624,628**	**8,844,089**	**27,492,294**
사회복지기금	8,082,900	△778,226	191,982	970,208	7,304,674
식품진흥기금	474,052	△95,938	76,889	172,827	378,114
재난관리기금	1,997,305	694,426	1,691,493	997,067	2,691,731
옥외광고발전기금	587,979	35,415	176,065	140,650	623,394
인천개항장문화지구진흥기금	2,288,283	△121,230	49,266	170,496	2,167,053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20,234,412	△5,969,760	423,081	6,392,841	14,264,652
고향사랑기금	46,824	15,852	15,852	-	62,676

○ 2025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개로 2025년도말 조성액은 27,492,294천원이며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하여 6,219,461천원이 감소함

○ 기금은 특정 분야의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일반적인 예산회계와 달리 사업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인 재원운용이 가능하도록 조성 운용하는 만큼,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 실적에 대한 설명과 기금의 설치 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기금재정의 효율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기금 관리부서에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하여 최근에 사업을 실시하지 않거나 사업 실적이 미미한 기금은 폐지하고, 일반회계 사업과 동일 사업을 기금에서 지원하지 않도록 정비대상 기금을 선정·관리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바람

사. 성과보고서

【 성과지표달성 현황 】

(단위 : 개, %)

실 국 명	성 과 목 표						
	전 략 목 표 수	정책사업목표		성 과 달 성 도			
		개 수	지표수(A)	초과달성 지표수(B)	달 성 지표수(C)	미달성 지표수	달성률 ((B+C)/A)
계	11	122	223	20	176	27	88
의회사무과	1	1	2	1	1	0	100
기획예산실	1	2	5	0	5	0	100
법무감사실	1	1	4	0	4	0	100
홍보체육실	1	5	10	2	8	0	100
행정관리국	1	23	34	1	30	3	91
주민생활국	1	21	42	3	32	7	83
도시개발국	1	27	45	3	34	8	82
영종행정국	1	19	34	2	28	4	88
영종건설국	1	18	27	1	21	5	81
구출범준비단	1	2	5	3	2	0	100
보 건 소	1	3	15	4	11	0	100
동행정복지센터	0	0	0	0	0	0	0

○ 각 실국별 성과지표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정책사업목표 122개에 따른 성과지표 223개 중 196개 지표에 대하여 목표를 달성하여 달성률이 88%로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일부 지표의 성과 목표를 과도하게 하향 설정하거나, 결과 산정 방식이 부적정한 경우도 보임

○ 공공사업의 경우 그 성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계량적 측정 및 정량화 하기 어려운 요소가 많아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크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 선정시 단순한 수치 나열에 그치지 않고, 성과 목표의 달성이나 미달성에 대한 원인을 심층 분석하여 그 결과를 차기 사업 계획 및 예산 편성에 실질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성과 평가 결과와 예산편성 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며, 성과관리 제도가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아. 종합 검토의견

○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회계법」 제14조[6]에 따라 한 회계연도 동안 집행부가 집행한 예산에 대한 결산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0조[7]에 따라 의회가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이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결산지침의 준수 여부 검사 및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여 검사한 후 구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 절차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고자 하는 것임

○ 주요 시설공사 사업에 대해서 연도별 세부집행계획을 보다 면밀히

6) 제14조(결산의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2.>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검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업무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검토하여 집행률을 제고하고, 차기년도 예산 확보 시 패널티 적용 및 예산삭감이 우려되는 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사업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또한 성과지표의 타당성 재정립을 통한 성과보고서 신뢰성 제고 및 세입예산 미편성 수입의 징수 및 수납 관리체계 개선, 회계 간 전출입금 편성의 적정성을 확보 등 2025년 결산검사 결과 제시된 개선 및 권고사항들을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충실하게 반영하여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　　의

- 원리금 등 상환계획 수립 시 향후 재정 여건과 상환 규모 등을 면밀히 예측하여 안정적인 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주기 바람
- 미수납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 원인과 유형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세입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 본예산 편성 시 사업별 추진 일정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단계부터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람
- 과도한 집행잔액 발생은 필요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 재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최근 3년간 사업별 집행잔액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 편성 시 적정 규모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성과지표 달성도가 대부분 100%를 초과하고 있는 만큼, 당초 성과지표가 실제 성과를 측정하기보다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함. 단순한 달성률 제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설정해주기 바람

- 일부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이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하기 보다는 형식적·명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임.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개편해주기 바람
- 부서별 성과지표의 작성 방식이 상이하여 성과를 일관되게 비교·평가하기 어려운 만큼, 작성 방식을 통일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기 바람
- 사업 추진 규모와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할 경우 불용액 및 집행잔액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실제 소요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주기 바람
- 사업의 중요성과 주민 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적정 수준으로 예산을 확대하는 등 필요한 재원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 바람
- 주민에게 직접 지원되는 사업은 홍보 및 안내 부족으로 예산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주기 바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의견 및 기타

○ 없　　음